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(이하 “성동교육청”이라 한다)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 1 조 목 적

본 협정서는 서울교대와 성동교육청간에 교육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업무 협력 분야

본 협정서에 대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사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
2. 초등교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연수
3. 교과교육연구회 지도교수제 운영
4. 기타 상호 교류 협력 가능 분야의 발굴 및 추진

제 3 조 비용의 부담 등

서울교대와 성동교육청은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며, 업무협력에 따른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4 조 보 안

본 협정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, 문서는 양 당사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제한하며 공개 필요시 서면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.

제 5 조 협정의 변경 및 해지

1.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정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.
2.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어느 일방이 6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정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① 본 협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
 - ② 공동 협력사업 평가결과 협력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
 - ③ 기타 양 기관 협력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
제 6 조 효력 및 유효기간

1. 본 협정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며, 제5조 2항에 의한 협약해지 결정이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2.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4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 및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.

제 7 조 기 타

본 협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4월 8일



서울교육대학교
총 장 송 광 용

송 광 용



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
교육장 김 홍 섭

김 홍 섭